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. 10. 2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9월 13일

나. 발 의 자: 이순우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9월 23일

라. 상정일자: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9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별표에 기재된 일수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 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개정 조항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별표3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.
- 검토 결과
 - 지난 '24년 7월 2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상위법 별표1 중 “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경조사 휴가일수”가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 되었음.
 - 충분한 애도 및 추모 기간으로 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, 상위법과의 정합성도 제고할 수 있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순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9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9. .

발 의 자: 이순우·이규선·차인영

전승관·임헌호 의원(5인)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별표에 기재된 일수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
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 3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“제5조제2항 관련”을 “제8조제1항 관련”으로 하고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“1”을 “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